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양송이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양송이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동물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동반자적 관점의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추세로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취지와 방향성을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 구의 동물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동물학대”, “동물복지”,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 등을 용어의 정의에 추가함(안 제2조)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공고, 반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안 제10조)

- 유기동물 보호담당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11조)
- 구가 소유권을 취득한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및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16조제2항)
- 동물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6조)
- 동물의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17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22.4.26. 전부개정, '23.4.27.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전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안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사항을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정 위탁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8조(동물의 구조·보호)에서는 구조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동물의 반환 및 소유권 취득)는 보호 동물의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 구(區)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1조(동물보호 및 관리)는 유기동물 보호담당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대상 전공을 축소하되, 실무 경험과 관련한 요건 사항을 구체화함.
 - 안 제12조(유기동물의 입양 및 분양·기증)에서 안 제10조에 따라 구(區)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 및 관련 단체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이 유기 동물을 입양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안 제14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에서 중성화 목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획한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하
되 예외 조항을 신설함. 또한 구조한 뒤 안 제9조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
난 경우에도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6조(동물 보호 및 복지 문화조성)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조성
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반려견 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
조에서 공원시설 중 “동물놀이터”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려동
물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의 자치구
에 총 12개소로 영등포구에는 안양천 오목교 부근(문래동6가 52)에 1개
소가 설치되어 있음.
- 현 조례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를 삭제함.
이는 동물복지정책 수립 등 동물 보호에 대해 자문하는 동물복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에서 적극 운영하기에 자치구 차원에서 실효성
이 없어 삭제한 것임.
- 현 조례 제17조(출입·검사 등)를 삭제함. 「동물보호법」 제86조에 규정되
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옮긴 규정이기 때문에 입법 경제상 불필요하여
삭제함.
- 현 조례 제18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를 삭제하고 「동물보호법」 제90조에
근거하여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검토 결과

- 최근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양
육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동물 유기 및 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
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의 유기·학대
에 대한 대응을 넘어 동반자적 동물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
어 왔으며, 본 개정조례안 또한 이와 같은 방향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
다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
----------	-----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 양송이, 신흥식, 유승용
·이예찬, 임헌호, 이순우
의원(6인)

1. 제안이유

지금까지 동물 관련 법령 및 현행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는 동물에 대한 유기, 학대에 대응하여 일방적 구조, 보호에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나 동물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동향은 ‘동반자적 관점의 동물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추세임. 따라서 이러한 취지와 방향성을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 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변경)
- 나. 조례 개정의 취지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동물학대”, “동물복지”,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 등을 용어의 정의에 추가함(안 제2조)
- 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복지위원회는 시, 도

단위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실제 우리 구에서도 전혀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6조 삭제)

라. 구가 소유권을 취득한 유기동물을 입양 및 분양·기증하는 경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입양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공고, 반환, 구의 소유권 취득, 입양·분양·기증 등에 관한 내용을 시간적·논리적 흐름에 따라 분류·배치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구성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길고양이의 방사 장소를 포획장소로 하는 원칙만 두고 있는 현행 조문에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로의 방사가 가능하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재정비구역 등에서의 안전을 확보함(안 제14조제2항)

사. 중성화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가 아니라 유실·유기된 길고양이의 구조·보호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중성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아.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제2항 신설)

자. 그 밖에 동물보호법 및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함

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6. 8. ~ 6. 13.)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6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1.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거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보호정책”을 “동물보호 정책”으로, “한다”를 “하고, 구민에게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동물보호단체”라 한다)”로 한다.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소유자 등의 책임)”을 “(소유자등의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소유자 등”을 각각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 제1항 본문 중 “유실·유기방지”를 “유실·유기 방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를 지정한”을 “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다른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동물등록대행자”를 “등록대행자”로,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6조·제20조에 따른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의 충족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발견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동물보호센터 감독)”을 “(동물의 반환 및 소유권 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9조에 따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구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11조(중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를 “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수의(公獸醫)에게”를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수의(公獸醫)”를 “공수의”로, “보호·관리중”을 “보호·관리 중”으로, “보호·관리 상태”를 “보호·관리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적합하지”를 “맞지”로, “법 제39조제1항제3호”를 “법 제86조제1항제3호”로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 경험이 있는 자

제12조의 제목 “(보호동물의 공고 등)”을 “(유기동물의 입양 및 분양·기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16조제5항에

다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2. 동물등록비용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동물 보호 및 복지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반려동물 문화·체육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람과 반려견의 건강한 공존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중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소요경비의 징수)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중전의 제16조) 제2항 중 “포획하는”을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

한”으로, “방사할 수 있다”를 “방사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제14조(중전의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9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17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9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9조)의 제목 “(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u>”이란 「<u>동물보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p> <p>2. “<u>등록대상동물</u>”이란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동물보호법 시행령</u>」(이하 “<u>시행령</u>”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u></p> <p>제 2 조 (정 의)</p> <p>-----</p> <p>-----</p> <p>1. “<u>소유자등</u>”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u>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u>”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p> <p>3. “<u>동물학대</u>”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6.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거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

5. (생 략)

<신 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영등포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소유자 등의 책임) ① 소

한다.

8. (현행 제5호와 같음)

9.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10. -----
----- 뜻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동물보호 정책-----

----- 하고, 구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동물보호단체” 라 한다)-
-----.

제4조(소유자등의 책임) ① 소유

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에 대하여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물관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자 등

② 소유자 등

③ 소유자 등

④ 소유자 등

⑤ 소유자 등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시장의 동물 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 구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사항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 후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 유실·유기 방지

-----가 ----- 있는

-----.

② ----- 다른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

-----.

③ -----

-----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지급-----.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 등록대행자-----

---- 따로 -----

<삭 제>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법 제35조에 따라 ----- 라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동물보호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시행
규칙 제16조·제20조에 따른 설
치기준 및 준수사항의 충족여부
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
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
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
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
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보호센
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
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제10조(동물의 반환 및 소유권
취득)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
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
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사람은 제9
조에 따른 공고기간 중 소유자
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른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
을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
는 구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8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발견신고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2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기동물의 입양 및 분양·기증) ① 구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신 설>

<신 설>

제13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

한 때에는 등록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2. 동물등록비용
3. 동물보험료 또는 동물의료비

제11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 법 제34조 -----

-----.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

한 사람

2. 그 밖의 동물보호·동물복지

· 실험동물 분야와 관련된 사

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

람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에게 진료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에게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

장은 제11조에 따라 구조한 유

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

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

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

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

-----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가 -----.

③ ----- 공
수의-----
보호·관리 중-----
---- 보호·관리상태-----
-----.

④ -----
----- 맞지 -
----- 법
제86조제1항제3호-----
-----.

<삭 제>

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5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

제13조(소요경비의 징수)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받는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생 략)

<신 설>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제17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16조(동물 보호 및 복지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반려동물 문화·체육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람과 반려견의 건강한 공존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9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

③ (생 략)

제17조(출입·검사 등)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영업자나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 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은 동물 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동물복지지원센터 설치·운영) ①·② (생략)

제20조(반려동물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체육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